

의안번호	제 33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자원 조례안

발 의 자	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11월 28일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전원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7
----------	-----

발의연월일 : 2019년 11월 28일

발의자 : 전원표, 허창원, 이옥규,
송미애, 연철흠, 정상교,
이상식

1. 제정이유

- 충청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 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능나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도지사의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안 제4조)
- 재능나눔 사업 (안 제5조)
- 사업비 및 포상 등 행·재정적 지원 (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없음

라. 입법예고 : 2019. 11. 8 ~ 11. 27

4. 제정 조례안 : 붙임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 재능을 보유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지역사회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재능나눔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능 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도지사는 재능나눔의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능 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능나눔 관련 도민 참여의 활성화
2.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
3. 재능나눔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
4.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
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재능나눔 사업) 도지사는 재능 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재능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3.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 나눔 홍보
4.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에 관한 변상
5.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
6. 그 밖에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 나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능나눔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관계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재능나눔을 장려하거나 권고하는 성격이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